

전력기기

미국 케이블 관세 업데이트

철강/비철금속

Analyst 장재혁

jaehyeok.jang@meritz.co.kr

RA 김아현

ahyun.kim@meritz.co.kr

안녕하세요, 메리츠증권 장재혁입니다. 8/4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“Section 232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관세 대상에 14개 파생품목 편입 제안” 업데이트 드립니다.

(참고: [편입제안 및 의견수렴공고 원문](#))

Meritz Research 2026. 8. 11

▶ 개요

1. 공고 내용

- 미 상무부 BIS, Section 232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관세 대상에 14개 파생품목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(8.6 연방관보 게재, 의견 마감 8.27)
- 케이블 관련 대상품목: 구리 도체 전기 케이블 4개 HTS 코드
 - 1) 8544.49.2000: 80V 이하 배선재
 - 2) 8544.49.3040: 구리, 600V 초과~1kV 전력케이블
 - 3) 8544.49.3080: 구리, 600V 이하 (건축용 전선, UTP/LAN 케이블)
 - 4) 8544.60.4000: 구리, 1kV 초과 (초고압·해저케이블)
- 제안 세율: 전체 통관가액 기준 25%
- 부스덕트, 광케이블(8544.70),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 (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이미 Section 232 대상)
- 전력도체와 광섬유가 하나의 외피에 통합된 일부 해저케이블은 CBP 분류 사례상 8544.70.0000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예외 가능성 있음

2. 관세율 변화 (발효 시)

- 현재는 Section 301(강제노동, 7.24 발효)이 적용 중
- Section 232 편입 시 301은 면제, 232로 대체되는 구조
- 한국산: 현재 12.5% (KORUS 0% + 301 12.5%) → 25.0% (232 25%), +12.5%p
- 베트남산: 현재 16.0~17.8% (MFN 3.5~5.3% + 301 12.5%) → 28.5~30.3%, +12.5%p
- 증분은 양국 동일하며, 미국 현지 생산(0%)과의 격차만 확대되는 구조
- 발효 시점은 미정이나, 직전 라운드(2025년) 절차 소요기간 감안 시 4Q26 전후 추정

▶ 주요 케이블 업체 미국향 매출 비중

1. 대한전선 (001440)

- 미국향 매출은 현지 판매법인 T.E.USA를 통해 대부분 인식되며, 시공 등 일부 매출은 별도법인으로도 인식
- 1Q26 연결매출액 1.08조원 중 T.E.USA 매출액 1,486억원 (13.7%)
- 초고압 중심의 수주잔고 중 북미 비중 20~25%

2. LS전선(별도)

- 미국향 매출 비중 약 6%
- 초고압 중심의 수주잔고 중 북미 비중 약 25%
- 단, 2028년 가동 예정인 미국 초고압/해저케이블 공장으로 대응 가능

3. LS에코에너지 (229640)

- 미국향 수출은 가온전선의 100% 자회사 LSCUS(미국 현지 생산/판매법인)를 통해 판매
- 1H26 매출액 6,358억원 중 미국향 수출은 배전 부문 내 URD케이블 약 120억원, UTP케이블 약 600억원
- URD케이블은 알루미늄 도체가 주된 제품으로 이번 공고 영향 없음 (기존대로 MFN 3.2% + Section 232 알루미늄 25%)
- UTP케이블(8544.49.3080)은 발효 시 기존 15.3~17.8%에서 30.3%로 인상
 - 2026.2.24~7.23: MFN 5.3% + Section 122 10% = 15.3%
 - 2026.7.24~현재: MFN 5.3% + Section 301 12.5% = 17.8%
 - 발효 후: MFN 5.3% + Section 232 25% = 30.3%

4. 가온전선 (000500)

- 1Q26 연결매출액 7,635억원 중 북미향 매출 1,685억원 (22.1%)
- 단, LSCUS(미국 현지생산) 매출 1,282억원 제외 시 국내공장의 북미향 매출은 403억원 (5.3%)
- 본사의 미국향 AI 데이터센터·태양광 전력망용 케이블 수출은 '25년 1,000억원 → '26E 2,000억원 전망 (동사 언급)
- 1H26 매출액 1.6조원 기준 연환산 매출 노출도 6.2% 수준

▶ 시사점

- 관세 부담의 수출자/수입자 간 귀속과 가격전가율을 고려해야 하므로, ‘미국향 매출 익스포저 × 관세인상분’의 단순계산으로 손익 영향을 추정하기는 어려움
 - 아직 확정된 관세 아니며, 의견수렴 후 실제 발효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
 - 특히 해저케이블 등 미국 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‘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할 수 있는가(the extent to which domestic production of the products can meet domestic demand)’를 심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어, 품목 조정 가능성 있음
 - 또한 광섬유가 통합된 일부 복합 해저케이블은 8544.60.4000이 아닌 8544.70.0000으로 분류된 CBP 사례가 있어 실제 관세 노출은 제품 구조별 확인 필요
 - 미국의 Section 232 정책은 원재료 및 반제품에서 점차 구리를 활용한 downstream 완제품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
 - 2025.8.1 Proclamation 10962: 구리 반제품 관세 (구리 함량가액 기준 50%)
 - 2026.4.2 Proclamation 11021: 과세표준 통관가액으로 전환, 실관세부담 확대
 - 2026.8.4 BIS 공고: 구리 도체 케이블로 품목 확대 제안
 - 케이블 산업에서도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해외 생산 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간 관세 대응력의 차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향후 의견수렴 종료 이후 최종 편입 여부와 세부 관세 적용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.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